

문하지 않고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서의 송달도 인터넷 등으로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나, 현재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.

다. 전자납부 방식의 신용카드납부제 실시

1) 현 황

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는 지난 '97년 4월 시범도입(대상 : 자동차세)되어 현재 84개 시군구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, 납세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분할납부, 결재일까지의 납기연장 등 납세자 편의증진 효과가 있으며, 과세권자 입장에는 체납액 감소, 세정의 투명화에 기여하고 있다.

그러나,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중 가맹점방식의 경우 사용수수료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(1.5%~2%)으로 납세됨에 따라 징세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(2000. 1월)하여 신용카드사를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.

또한 전자납부 방식의 신용카드 납부

제를 도입·시행하여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부담이 없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 시행할 수 있게 된 바, 전자납부방식의 신용카드 납부제는 납세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용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지방세 납부코너를 선택한 후 인터넷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시행중이며 현재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시행중이나 이 경우도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와 같이 농어촌지역 등 PC보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.

2)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운영사례

<경기도 의정부시 가맹점방식>

- 대상세목 : 시세 (재산세, 종토세, 자동차세, 주민세 등 8개 세목)
- 수 수 료: 지자체 부담 (징수액의 2%, 연간 약 2,500만원)
 - ※ '99. 11 현재 이용실적 : 시세 538억원중 12.87억원 (2.4%)
- 징수기관 : 시청(세무과), 동사무소, 시금고은행(농협), 단위농협
- 수납절차 : 신용카드로 세금수납시 자동적으로 한국정보통신(주)에 전산으로 전송→한국정보통신(주)는 각 신용카드사에 대금청구→신용카